

약속을 지키는 민주당, ‘민생과 개혁’ 주요 법안 처리 성과

- 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하고, 동물보호와 복지제도 개선하는 ‘동물보호법 개정안’
- ②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,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‘주민투표법 개정안’

-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(제394차)에서 ‘민생·개혁’을 위한 우리당 주요 법안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법안을 처리했음
- ‘동물보호법 개정안’은 동물의 학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 동물보호 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임. 이와 함께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마련하고,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임
- 또한 ‘주민투표법 개정안’은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,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하며,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요건을 현행 총수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낮추는 내용임.
-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,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음

2022. 4. 5.



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환

번호	법안명	주요내용	비고
1	<p>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동물등록, 보험가입, 중성화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. ○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,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며,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·복지 제도의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반영함. ○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지정·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심의 및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을 도입함. 	
2	<p>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,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전자서명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. 	